

# 제6차 WCPFC NC-IATTC 참다랑어 합동 작업반 참석 결과

2021. 8.



한국원양산업협회

해외수산업협력센터

## I 회의 개요

---

□ **회의명** : 제6차 WCPFC 북방위원회-IATTC 참다랑어 합동작업반\*

\* 영문명 : Sixth Joint IATTC-NC Working Group Meeting on PBF Management

□ **회의 목적**

○ 북태평양 참다랑어 관리 논의

□ **일시/장소** : '21.7.27.(화) ~ 7.29.(목) / 화상회의\*

\* 해외수산협력센터 영상회의실

□ **참석자**(약 100여명) : 한국, 미국, 일본, 대만, 멕시코 등 북태평양 참다랑어 조업국 및 NGOs, 업계 등

○ 해외수산협력센터 참석자 : 원태훈 전문관, 김수민 전문관

□ **주요 논의**

○ 북태평양 참다랑어 어획한도(catch limits) 증가 논의

- 동태평양-서태평양 어업영향 재균형

- 0.68 소형어-대형어 변환계수(conversion factor) 적용 여부

- 미소진분 이월률 재설정

- 한국 대형어 어획 한도 설정

○ 2차 회복계획 어획통제규칙(HCR) 설정 논의

- 2차 회복계획 thresholds 설정 논의 등

○ 코로나19가 PBF 관련 업무에 미치는 영향

## II 주요 논의 내용

### 1 태평양 참다랑어(PBF) 보존조치 개정 논의

#### □ 일본 제안서 논의

- (논의 배경) 일본은 ISC\* 시나리오에 따라 동태평양(EPO)과 서태평양(WPO)에서 소형어와 대형어의 어획량을 20%씩 증가 제안\*\*

\*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ittee for Tuna and Tuna-Like Species in the North Pacific Ocean(ISC) : WCPFC 북방위원회(NC) 및 NC-IATTC JWG의 과학서비스제공자

\*\* 일본 PBF 제안서 주요 내용

주 제	내 용
어획 한도 증가	EPO와 WPO에서 소/대형어 20%씩 어획량 증가
이월률 증가	미소진분 이월률을 기존 연 5%에서 17%로 증가
0.68 변환계수	소형어 한도를 이용하여 대형어 어획 시 0.68 변환계수 적용

- (우리나라 입장) 우리나라는 일본 제안서에 전반적인 동의하며, 어획 한도 증가에 따른 국가별 세부 수치 논의 필요성 강조
- (미국 주장) 논의 시작과 동시에 미국은 자신들의 어획통제규칙(HCR) 제안서와 어획한도 증가를 패키지로 묶어 동시에 협상을 진행
  - 일본이 제안한 소/대형어 20% 증가 대신 EPO와 WPO에서 대형어만 15%씩 증가하기를 제안\*하였고,
    - \* 대만은 이번 협상 논의 내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PBF 한도 증가에 보수적인 접근을 주장하였고, 일본의 20% 소/대형어 증가 제안에 우려를 표하며 미국의 대형어 15% 증가안에 동의
  - EPO와 WPO의 어업 영향 균형을 맞춘다는 명목으로 EPO에 추가 대형어 200톤 증가를 요구
  - 0.68 변환계수는 국가 할당량의 10%까지만 허용하기를 주장하고, 미소진분 17% 이월률은 IATTC 현행 조치에 따라 격년으로 적용하기를 제안

- (일본 주장) 일본은 논의 초반 미국의 HCR과 어획 한도를 수평선상에 놓는 논의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미국의 어획 한도-HCR 패키지 논의 방식에 반대하였으나,

\* 일본은 어획 한도 증가는 다음 1년에 제한된 반면, 미국이 제안한 2차 회복기간 HCR 설정은 향후 10년간 적용되는 조치이기에 동일 선상 논의는 부적절하다 주장

- 적당한 타협을 위해 양 기구의 수역에서 소형어를 제외한 대형어 어획 한도를 15% 증가하는 제안을 수용
- 하지만 미소진분 이월률 논의에서는 17% 매년 이월 허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격년 적용은 수용 불가함을 피력하였고,
- 0.68 변환계수 관련, 한 국가 어획 한도의 10%로 제한하는 의견에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 한국 대형어 어획 한도 신설 논의

- (논의 배경) PBF 대형어 어획 한도 증가 논의 중 소형어 어획 한도만 보유\*한 우리나라를 특별고려하여 한국을 위한 대형어 어획 한도 설정 논의

\* 현재 우리나라는 대형어 한도 없이 현행 WCPFC PBF 규정(CMM 2020-02 제3항)에 따라 소형어 한도를 이용하여 대형어 어획

- (논의 내용)

번호	논 의 내 용
1	우리나라는 미국의 EPO 추가 200톤 증가를 기반으로 현 WPO와 EPO의 어업 영향 차이를 고려하여 WPO에 추가 600톤* 증가를 주장 * 본 600톤은 한국을 위한 한도가 아닌 WPO PBF 조업국들(한국, 일본, 대만)에게 분배될 수치임을 설명
2	미국은 우리나라에게 30톤의 대형어 한도를 제안 - 미국은 동시에 우리나라의 소형어 한도를 대형어로 영구 변환하는 옵션 제안
3	일본은 우리나라의 PBF 대형어 어획량이 '16년부터 급격히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08~'15년 평균인 48톤이 적절하다 주장
4	우리나라는 WPO 국가들을 위한 600톤 수용이 어렵다면 한국을 위한 200톤(우리나라 지난 5년 PBF 대형어 어획량 평균) 제안 → 미, 일, 멕시코 등 반대

5	미국은 우리나라에게 30톤 이상이 주어지면 EPO-WPO의 어업 균형이 깨지게 되므로 절대 수용 불가 입장 표명
6	우리나라는 이미 일본의 소/대형어 20% 증가에 동의한 만큼 소형어 한도 증가를 제외하면 많은 양보를 했음을 설명하고, 미국의 패키지 논의가 ISC 시나리오에서 벗어나 과학적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며 ISC 시나리오에 따르면 소형어 어획을 증가해도 이미 목표 달성률이 90% 이상임을 상기 - 소형어 한도 증가가 없는 만큼 우리나라를 위한 더 많은 고려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미국의 EPO와 WPO 사이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주장 역시 과학적 근거가 없음을 지적
7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 합의가 나지 않자 패키지 협상 무산
8	의장의 중재안으로 대형어 30톤과 더불어 0.68 변환계수 적용률을 우리나라에게만 25% 적용하는 조건으로 패키지 합의

## □ PBF 보존조치 개정 논의 결과

주 제	논 의 결 과
어획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CPO : 대형어 15% 증가 + 대형어 한도 없는 국가 30톤 증가</li> <li>• EPO : 대형어 15% 증가 + 추가 대형어 200톤</li> <li>• 소형어 증가 없음</li> <li>* 새로운 PBF 어획 한도는 WCPFC와 IATTC 신규 보존조치에 국가별 한도 표에 명시</li> </ul>
미소진분 이월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CPFC와 IATTC 모두 '21~'22, '22~'23, '23~'24년 어기 미소진분 17% 이월 허용</li> </ul>
0.68 변환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한도의 10%*까지 0.68 변환계수 허용. 나머지 90%는 1대1 비율로 소형어-대형어 한도 변환</li> <li>* 대형어 한도가 없는 국가는 25% 적용</li> </ul>

## 2 PBF 2차 회복목표 논의

### □ 미국 어획통제규칙(HCR) 제안서 논의

- (논의 배경) 태평양 참다랑어 1차 회복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예측되자 미국은 WCPFC PBF 어획전략(Harvest Strategy)\*에 따라 2차 회복목표 기간에 적용될 어획통제규칙(HCR)\*\*을 제안

\* WCPFC Harvest Strategy 62항

62. Harvest controls rules during second rebuilding period: Harvest control rules to be

applied during the second rebuilding period will be decided, taking into account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im harvest control rules applied during the initial rebuilding period.

\*\* 미 HCR 제안 주요 내용

주 제	내 용
2차 목표 threshol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차 회복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70% 미만일 경우, 달성률을 70%로 올리기 위해 보존조치 개정</li> <li>• 2차 회복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75% 이상일 경우, 달성률을 70% 이상으로 유지하는 조건 아래 어획 한도 증가 가능</li> </ul>
EPO 어업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존조치 개정 시 동태평양에서 산란자원량에 대한 관련 어업 영향(relative fishery impact on SSB)이 25%가 되도록 목표 설정</li> </ul>

- (일본 주장) 아직 PBF 1차 회복계획이 진행 중이기에 2차 회복 계획을 위한 구체적인 HCR 논의는 시기상조
  - 미국에 제안한 70% threshold는 과도히 높은 기준이며, 현 HCR threshold가 60%로 설정되어 있으니 현행 60%를 유지할 것을 주장하였고,
  - 내년에만 1년간 적용되는 일본의 어획량 증가 제안을 향후 10년 동안 적용될 2차 회복목표 HCR과 하나로 묶어 일직선상에 두려는 미국의 시도에 크게 반발
- (미국 주장) 1차 회복목표는 이미 달성을 눈앞에 둔 만큼 2차 회복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논의 시작 필요
  - 2차 회복목표 기간은 '34년까지 혹은 1차 회복목표 달성 후 10년 이내이기에 1차 회복목표 달성 직전인 지금이 논의 적기임을 강조 하였고,
  - 현 PBF 관리 체제에서는 목표 달성률에 따라 어획 한도의 지속적인 증가가 가능하기에 최대한 높은 threshold를 설정하여 잦은 어획량 증가 시도를 예방하려는 목적임을 설명
- 미국은 회의 중 회원국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rev.1) 제출

○ (미국 HCR 제안서 rev.1 주요 내용)

기존 제안	rev.1
2차 회복목표 달성 확률이 70% 미만일 경우 70% 달성이 가능하도록 보존조치 개정	2차 회복목표 달성 확률이 70% <b>60%</b> 미만일 경우 70% <b>60%</b> 달성이 가능하도록 보존조치 개정*
보존조치 조정은 동태평양의 관련 어업 영향이 25%가 되도록 목표하여 고려	보존조치 조정은 동태평양의 <del>관련 어업 영향이 25%가 되도록</del> <b>서태평양 조업과 동태평양 조업 사이의 SSB에 대한 과거 조업과 향후 조업의 비울적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b>

\* 어획 한도 증가를 위한 threshold(70%) 제안은 그대로 유지

○ (논의 결과) 미국 HCR 제안서 rev.1 채택

### 3 기타 논의

#### □ 코로나19 영향

- (MSE 개발) 코로나19로 인하여 PBF MSE 개발 지연
  - 일본은 MSE 개발을 위한 WPO 측에서 전문가 1명을 지정하였으나 EPO 측에서도 전문가 1명 지정 촉구
  - ISC는 MSE 개발을 위한 인력과 위원회의 지침이 부족함을 설명
- (CDS 개발) CDS 개발 역시 코로나19로 지연
  - 전자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 PBF와 함께 다른 주요 다랑어종의 CDS 포함 여부 결정 필요

#### □ 향후 회의 일정

- (JWG07) 차기 WCPFC NC-IATTC 합동작업반은 일본에서 개최 예정\*
  - \* NC18과 동시 개최 예정. 구체적인 장소 및 날짜는 미정이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